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14/2016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정부의 차별 금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임대 및 주택 매각 거래에서의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공정 주택 시행 프로그램 출범**

**주택 차별 피해자들을 위해 123건의 진정을 해결**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임대 및 주택 판매 거래에서의 차별을 적발하기 위한 획기적 이니셔티브인 공정 주택 시행 프로그램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지사는 인권과와 주무부에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주정부의 주택 시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규제를 제안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의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불법 주택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공격적 조치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123건의 주택 진정의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인종, 피부색, 국가 기원, 장애 및 가족 지위에 근거한 주택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정이 타결되었습니다.

“단순하고 고통스런 진실은 더 나은 사회 창조를 위한 우리의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에 아직도 차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제공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 우리는 법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주적으로 더 튼튼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창조하기 위해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공정 주택 시행 프로그램**

주택 임대 및 매각 거래에서 차별을 적발하고 주택 제공자들이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는 오늘 공정 주택 시행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시행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다음 3개의 공정 주택 기관이 주정부와 제휴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Buffalo의 Housing Opportunities Made Equal(HOME), Syracuse의 CNY Fair Housing 및 Westchester, Rockland 및 Putnam 카운티의 Westchester Residential Opportunities.

이 새 프로그램에 의거 주택지역사회갱신과는 다양한 인종, 성별, 및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부모와 장애인을 대표하는 훈련된 공정 주택 “테스터”를 사용하여 모든 뉴욕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터들은 잠재적

임차자 또는 주택 추구자로 행동하면서 판매자와 임대주들 사이에 차별적 편견이 있는지 테스트할 것입니다. 테스터들은 팀으로 일할 것이며 주택 취득 노력에서 부동산 중개소 및 소유자들에게 유사한 소득과 경력 프로필을 제시할 것입니다. 테스터가 받는 취급은 문서화되고 그 결과가 분석될 것입니다. 차별 가능성이 적발되면 조사되어 기소될 것입니다. 공정 주택 시행은 또한 뉴욕주에서의 주택 임대 또는 매각에서 차별이 금지당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소유자 및 임대주에 대한 조사도 포함할 것입니다.

연방 공정주택법과 뉴욕주 인권법에 의거 장애, 인종, 피부색, 국가 기원 또는 가족 지위에 근거한 주택 판매, 임대 또는 리스에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률은 주택 제공자, 임대주 및 관리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와 브로커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택 제공자들은 또한 장애인들에게 주택의 완전한 사용과 향유를 허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조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주택 제공자가 연방 및 주 민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종 소수자 및 장애인 같은 피보호 계층은 훨씬 더 작은 풀의 가능한 주거지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차별을 통해서든 또는 탐욕에 의한 괴롭힘을 통해서든 주택 접근성의 거부는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입니다”라고 **HCR 커미셔너 James S. Rubin**이 말했습니다. “HCR은 이 새로운 공정 주택 시행 프로그램과 주지사의 임차인보호과의 지속적 활동을 통해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말하면: 차별적 관행은 언제나 질색이기 때문에 조사되어 기소될 것입니다.”

“Westchester Residential Opportunities는 커뮤니티와 주민들을 위해 비차별적 주택 접근성을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Westchester Residential Opportunities, Inc.**의 집행이사 **Geoffrey Anderson**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지사 및 뉴욕주와의 이 제휴가 불법적 주택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 사명을 증진할 것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가족들은 그들이 살려고 선택하는 곳마다 환영 받아야 합니다.”

“HOME은 1963년 이래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합당한 주택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라고 **Housing Opportunities Made Equal(HOMENY)**의 회장 **Scott Gehl**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주택 접근성을 위한 주지사의 노력을 공유합니다 – 임대주의 편견이나 초기 임차자 인상이 주택 거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CNY Fair Housing의 중심 목표는 다양한 동네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라고 **CNY Fair Housing**의 회장 **Sally Santangel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옹호, 교육 및 단속 노력을 통해 그리고 주택 부동산 시장의 세심하고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이것을 합니다. 주택 부문은 다른 것처럼 – 알면서 또는 무의식 중에 차별 관행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공정 주택의 장애물을 식별하여 부수기 위한 이 합동 노력에서 주지사와 협력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주택 차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뉴욕주 인권과의 규제안은 피보호 계층 구성원과의 관계 또는 연루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주 인권법에 의거 불법적인 행동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인종, 피부색, 신조, 국가 기원, 성적 취향, 장애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 동료 또는 고객의 보호되는 특성과 상관 없이 주거 또는 상업 공간을 임차 또는 구입하거나 그러한 장소를 가게, 식당 또는 극장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할 것입니다.

예컨대, 주택을 모색하는 모친이 자녀의 인종 또는 장애 때문에 아파트를 거부 당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아파트를 방문하는 임차인 친구의 인종, 신조, 국가 기원 또는 성적 취향 때문에 퇴거 당하거나 동등한 조건을 거부 당할 수 없습니다.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객의 신조 또는 국가 기원 때문에 주거 아파트 임차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 공간 임차와 관련하여 차별 당할 수 없습니다. HIV/AIDS 관련 의료 조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고객의 장애 성격 때문에 상업 공간을 거부 당하거나 불평등한 리스 조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택 및 상업 부동산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인권법에 의거 공공 편의시설, 고용 및 신용을 포함한 모든 피보호 영역에 적용될 것입니다. 식당, 가게 또는 영화관 같은 공공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어떤 이용자 그룹이 그룹의 일부 구성원의 인종이나 기타 보호되는 특성 때문에 차별을 겪는 경우에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타당한 차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의 지시로 주무부는 차별적 행동이 법률에 의해 금지됨을 명시하는 규정을 공포할 것이며, 주무부는 시, 주 또는 연방 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차별적 행동에 연루된 것으로 발견된 부동산 브로커 또는 판매인의 면허를 취소할 것입니다. 주무부는 또한 부동산 업계에 새 규제를 알리고 부동산 브로커와 판매인들에게 법률에 의거한 의무를 알리는 상세 안내를 개발할 것입니다. 2015년에 뉴욕주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의하면 뉴욕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116,000여 건의 주거 부동산 매각을 성사시켰고 연말에는 100,000여 건의 활성 물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인권과장 Helen Diane Fos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택 접근성은 기본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경우 인권과가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주택 제공자들이 주 인권법에 의거한 의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권한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 **주택 차별 피해자를 위한 진정 해결**

최근에 뉴욕주 인권과는 2015년에 주택 차별을 주장하며 주정부에 제기된 123건의 타결에 도달하여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임대료 감액, 주거 조건 개선 및 장애인을 위한 램프 및 접근 가능 입구 같은 합리적 개조 같은 추가의 비금전적인 혜택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결은 위반을 단속하여 불법 주택 관행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지역별 주장 범위 및 동향은 전주 시행

프로그램에 반영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500여 건의 주택 차별 사건이 연방, 주 및 지역 당국에 제기됩니다.

이러한 123건의 지역별 명세가 아래에 있습니다 – 일부 사건은 1가지 이상의 차별 근거가 관련된 진정이었습니다.

### 인종에 근거한 주택 차별

DHR은 인종, 피부색 또는 국가 기원에 근거한 주택 차별 진정 4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7건은 뉴욕시, 9건은 Hudson Valley, 7건은 Long Island, 3건은 Finger Lakes 지역, 3건은 주도 지역, 1건은 뉴욕주 중부 지역, 1건은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타결에 포함된 사항:

- Rochester의 잠재적 임차인이 부동산 회사 브로커가 그녀의 인종 때문에 아파트 구경 및 신청 기회를 거부하면서 거짓 비가용성 주장으로 아파트 추구를 단념케 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브로커는 금전적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 세 아이의 어머니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진정서에서 그녀가 Suffolk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인이 3 베드룸 대기 리스트에 그녀를 올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다른 백인 주민들은 그러한 아파트에 즉각 이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결의 일환으로 관리인은 그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 경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주택 차별

DHR은 전주의 장애인들이 제기한 주택 차별 진정 9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4건은 뉴욕시, 16건은 Hudson Valley, 15건은 Long Island, 9건은 주도 지역, 5건은 뉴욕주 서부 지역, 4건은 Finger Lakes 지역, 4건은 Southern Tier, 2건은 Mohawk Valley, 1건은 뉴욕주 중부 지역, 1건은 North Country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들:

- Ossining의 여성이 건물 관리인이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딸을 위해 건물에 접근 가능한 램프를 설치해달라는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타결하기 위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 Saratoga Springs의 임차인이 그녀의 임대주가 그녀가 지팡이를 사용하고 여러 신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리스 갱신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임대주가 그녀에게 핸디캡 접근 가능 주차 공간의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주는 배상금 지급이 요구되었고 임차인에게 취한 사전 판단을 사과하였습니다.

## 여성에 대한 주택 차별

DHR은 자녀가 있는 가족 및 임신부에 대한 차별을 근거로 한 진정 2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1건은 뉴욕시, 6건은 Hudson Valley, 4건은 Long Island, 2건은 Finger Lakes 지역, 2건은 뉴욕주 서부 지역, 1건은 뉴욕주 중부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들:

- 어떤 커플이 세 미성년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Rye 조합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 조합에는 어떤 아이들도 거주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커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전적 화해금을 받았습니다.
- 어떤 여성이 임대주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녀의 유아의 울음소리가 윗층 이웃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Suffolk 카운티의 아파트 임차 기회를 거부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주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입법화한 역사를 자랑하며 모든 주민들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즐길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인권과는 고용, 주택, 공공 편의 장소, 신용 및 기타 소관에서 연령, 인종, 국가 기원, 성별, 성적 취향, 혼인 여부, 장애, 군필 여부 및 기타 지정된 계층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법률과 본 기관의 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인권과 웹사이트 [www.dhr.ny.gov](http://www.dhr.ny.gov)를 방문하거나 1-888-392-3644로 전화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